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1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권칠승·박홍배·김 윤

서미화 · 김준형 · 송옥주

정준호 · 임호선 · 민병덕

전진숙 · 문금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,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, 인천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. 또한,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,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 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,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1항ㆍ제5항,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).

법률 제 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1조제1항 본문 중 "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"을 "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"
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"보훈병원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"보훈병원"을 "보훈병원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(이하 "보훈병원등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중 "보훈병원에"를 "보훈병원등에"로 한다.

제51조의2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"보훈병원등"으로 한다. 제51조의3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각각 "보훈병원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1조(진료) ① -----제51조(진료)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 병(부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의 의료시설[「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 ----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 이라 한다)과 「공공보건의료 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진료한다. 다만, 본인의 고의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・운영하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-----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. 이 경 -보훈병원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3호에 따 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 른 공공단체가 설립・운영하는 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 공공보건의료기관(이하 "보훈 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 서 해당 <u>보훈병원에</u> 지급할 수 있다.

⑥ · ⑦ (생 략)

제51조의2(상이등급의 판정을 받 지 못한 경찰·소방공무워 등 에 대한 의료지원) 국가는 국 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 을 받지 못한 경찰·소방공무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 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 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 이처(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 우는 제외한다)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제51조의3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

<u>병원등"이라 한다)</u>
<u>보훈병원등에</u> -
<u>.</u>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제51조의2(상이등급의 판정을 받
지 못한 경찰·소방공무원 등
에 대한 의료지원)
<u>보훈병원등</u>
제51조의3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

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5 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<u>보훈병원등</u>
보훈병원등